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6. 30. 차규근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6. 7. 1.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7. 8.) 상정·제안설

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0.)

상정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3.)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5.)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16.)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2.)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3.)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4.)

상정 · 축조심사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7. 2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2026. 7. 29.)

상정·대체토론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26. 7. 29.)

상정 · 소위원회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차규근의원)

현행법은 검사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신문, 체포 · 구속, 압수 · 수색, 검시 등 개별 수사절차에서도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

소청을 설치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속하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혁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려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은 종전에 검찰이 보유하던 권한을 다른 수사기관에 단순히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권한의 행사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구속수사 · 임의수사와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원칙,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95조, 제195조의2 및 제195조의3).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현행 제196조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하고, 수사의 경합 규정과 검찰청 직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며, 피의자신문 ·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 검시 등에서 검사를 직접수사의 주체로 정한 조항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등 및 현행 제197조의4 · 제198조 · 제238조 · 제245조의9 삭제).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그 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245조의10),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과 잔존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공

소제기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